

- 신속통합기획 서대문구 00동 00번지 일대 -
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우리 구 00동 00-00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(가칭) 추진 주체에서 동의서 번호 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서에 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해당 구역 등을 공개하며, 추진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제출을 위하여 관련 서식(첨부1~4) 입안 요청(찬성) 동의서, 반대 동의서, 동의 철회서, 반대 동의 철회서] 을 안내해 드립니다.

제출한 찬성 동의서의 철회 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대표 신청자가 우리 구에 번호 부여 신청 전까지 입안 요청 동의를 첨부 2-1서식에 따라 철회하거나, 반대 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추천(區→市) 전까지 첨부 3-1서식에 따라 입안 요청 반대 동의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면 반대 동의서로 인정됩니다.

1. 구역(범위) : 00동 00-00 일대

※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으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구역 첨부

※ 토지등소유자 수 : 000 명(번호 부여 발급 요청일 기준)

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대표)

※ (주의사항)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첨)에 성명 및 연락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며, 미동의시 성명은 '성'만 공개(유00)하고 연락처는 사무실 번호만 공개

○ 성 명 : 000

○ 연락처 : 010-0000-0000 (사무실 : 02-000-0000)

3.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
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	00동 00번지 일대 제 0 호
번호부여일자	2024. 00. 00
확인(인)	

4. 공개 장소

○ 서대문구 홈페이지 > 분야별정보 > 도시관리 > 재개발

○ 번호부여 요청 구역의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

5. 기타 안내사항

-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,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(區→市) 또는 별도 區요청일이 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
- 동의 철회서(첨부2)는 대표 신청인이 우리 구에 신청하기 전까지, 반대동의서(첨부3) 및 반대동의서 철회서(첨부4)는 후보지 추천 전(區→市)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되며,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(첨부3)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입안요청(후보지 신청) 반대 동의율이 20% 이상이면 우리구는 '후보지 추천(區→市)' 을 제외하고, 기 발급된 번호부여 동의서를 무효처리 하며 추진 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
-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구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투기방지대책이 적용됩니다.

구 분	권리산정기준일 지정 (지분쪼개기 방지)	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
후보지 선정구역	후보지 추천일 기준	후보지 발표일 기준

- 대표신청인으로부터 ‘입안요청서(후보지 신청)’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고, 후보지 추천 전(區→市)까지 찬반의견에 대한 추가 동의서 접수 예정입니다.
- 후보지 미선정(취소, 추천제외 포함) 구역에 한하여 입안요청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.(단,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시 중복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0% 이상 찬성의견 제출시 예외)

- 후보지 미선정 및 주민반대로 인한 후보지 추천 제외, 취소된 지역을 50% 이상 포함하거나, 재신청 지역의 ‘중복율’이 50% 이상인 구역은 미선정일(후보지 취소, 추천 제외일)로부터 24개월 경과 후

※ **중복률** = $\frac{\text{미선정(취소, 추천제외)포함 면적(B)}}{\text{금회신청 구역면적(A)}} \times 100$

신규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본 안내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 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해당 내용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신속통합팀(02-330-○○○○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